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이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과세대상)

1.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금융 파생상품이며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설명	예시
① 주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 및 합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 출자지분 <p>※증권시장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국외주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임</p>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국내증권예탁증서 (KDR), 외국증권예탁증서 (GDR, ADR 등)
② 채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국채·지방채·특수채 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함) -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 <p>※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p>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어음, 파생결합사채(ELB, DLB)* 등
③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다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비정형간접 투자증권 등

* 파생결합사채(ELB,DLB)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변경됨

<p>④ 집합투자기구 (펀드)</p>	<p>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p>	<p>ETF,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p>
<p>⑤ 파생결합증권</p>	<p>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p>	<p>주식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증권(ETN)</p>
<p>⑥ 파생상품</p>	<p>기초자산의 가치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및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장외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CFD)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p>선물(선도), 옵션, 스왑</p>

2. 금융투자소득세 조세특례

-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다른 금융투자소득이 없는 한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등의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금융회사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어 고객이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제도)의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ISA 계좌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 전액 비과세 됩니다. ② ①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및 이자·배당소득: 모두 합산하여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계 좌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며, 200만원(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 계좌의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지방소득 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금융투자소득과의 관계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과 별도로 관리되므로, ISA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ISA 계좌와 일반 금융계좌의 차이

금융상품 유형	발생소득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반 금융계좌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이익 (양도·환매)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
	투자 손실	손익통산 후 순이익에서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배당이익		배당소득세
기타 금융상품	투자 손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세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세액감면 특례

-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두고 있는 과세특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과세특례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①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②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③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④ 요건을 충족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3천만원까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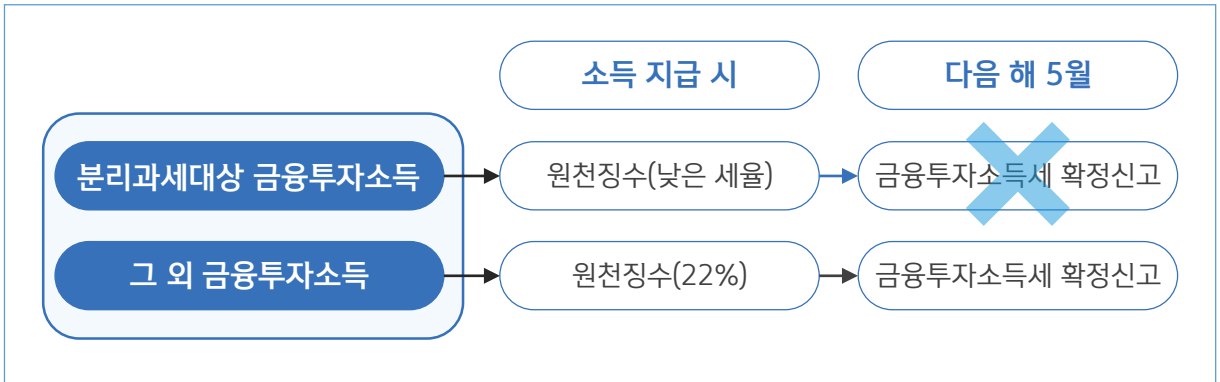
⑤ 65세 이상 거주자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⑥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⑦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201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그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마. 저율의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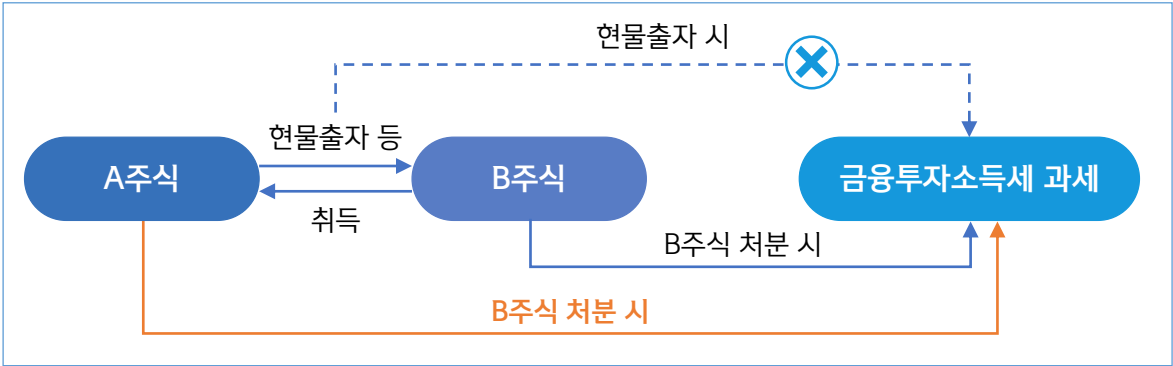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보다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며,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른바 뉴딜인프라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9.9%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9.9%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 ④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9%(지방소득세 비과세)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바. 과세이연 특례

- 과세이연 특례란 교환이나 현물출자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새로운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과세이연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이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시, 그 행사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② 산업재산권 2020년 이전에 현물출자 시, 그 현물출자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현물출자 시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 ③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으로 발생하는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완전 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④ 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3년간 과세 시기를 미룬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 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배주주가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 ⑥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배주주가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
- ⑦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취득한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
- ⑧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취득한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
- ⑨ KOSPI, KOSDAQ 상장법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대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그 대주주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그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주식을 받아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다른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
- ⑩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당초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재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시기를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

사. 조세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

- 아래 조세특례를 적용 받는 계좌의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
- ①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 ②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③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아. 펀드 조세특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선택 가능(확정신고 시)

-
-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조세특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조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 신청 절차 :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조특법 시행령 제24조 제14항, 제24조의2 제6항, 제81조의4 제5항 등]
-